

화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96. 4. 13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96. 4. 16

다. 상정일자 : 96. 4. 29 (제44회 임시회 제6차총무위원회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내무과장 이 병 일

나. 제안이유

○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(대통령령 제14074호 93. 12. 31) 개정되고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개정 규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장려수당을 현실에 맞게 개정

다. 주요내용

○ 분뇨처리 업무 전담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장려수당 인상 월 100,000원
→ 150,000원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김재휴)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수당조례 개정 규칙안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분뇨처리시설 근무자의 장려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사항으로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잘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.

4. 질의 답변 요지

"생략"

5. 토론요지

"생략"

6. 심사결과

【수정가결】

○ 제3조 "별표3"장려수당 지급표 제1항을 삭제

①시체화장 및 묘지,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
근무자 - 지급액 100,000원

※ 수정가결사유

○ 동조례안 제3조 별표3 장려수당 지급표 제1항은 우리군에는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시설이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으므로 삭제

○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

7. 첨 부 : 화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1996. 4.
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1. 제안이유

- 분뇨 특유의악취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사기양양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기 위함.

2. 개정근거

- 총무 12152-31 (94. 1. 6) 호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준칙안에 의함.

3. 주요골자

- 제3조 (장려수당) 중 "별표 3"

장려수당 지급 구분표

지 급 대 상	지 급 액	
	현 행	개 정
분뇨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100,000원	150,000원

화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

화순군지방공무원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 "별표 3"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장려수당 지급 구분표

지 급 대 상	지 급 액
① 삭 제	
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150,000원
③ 하수 .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100,000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
<p>(별표 3) 장려수당 지급구분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지급대상</th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지급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.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 는 시설 근무자 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 <u>100,000</u> </td> </tr> <tr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 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 <u>100,000</u> </td> </tr> <tr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③ 하수 . 폐수 및 쓰 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 는 시설 근무자 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 100,000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지급대상	지급액	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.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 는 시설 근무자	<u>100,000</u>	② 분뇨처리업무를 전 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<u>100,000</u>	③ 하수 . 폐수 및 쓰 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 는 시설 근무자	100,000	<p>(별표 3) (현행과 같음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지급대상</th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지급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① 삭제 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② 분뇨처리업무를 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 설 근무자 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 <u>150,000</u> </td> </tr> <tr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③ 하수 . 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 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 100,000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지급대상	지급액	① 삭제		② 분뇨처리업무를 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 설 근무자	<u>150,000</u>	③ 하수 . 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 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100,000
지급대상	지급액																
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.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 는 시설 근무자	<u>100,000</u>																
② 분뇨처리업무를 전 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<u>100,000</u>																
③ 하수 . 폐수 및 쓰 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 는 시설 근무자	100,000																
지급대상	지급액																
① 삭제																	
② 분뇨처리업무를 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 설 근무자	<u>150,000</u>																
③ 하수 . 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 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100,000																